

# 철도차량의 개조검사 수수료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19년 1월 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 1. 공통사항

- 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이하 “개조검사 수수료”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 ② 개조검사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및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7호)을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이 변동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검사기관은 철도차량 개조검사의 시행을 위해 현장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조검사 수수료 외의 항목으로 신청인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④ 검사기관은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58호, 2018.12.10. 시행) 제15조제1항 따른 부적합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항목을 재검사하는 경우 해당 항목의 재검사에 소요되는 개조검사 수수료(추가로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를 신청인에게 재청구할 수 있다.

- ⑤ 검사기관은 개조검사 수수료의 세부항목 이외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가장 유사한 검사항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검사기관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개조검사 수수료를 정한다.
- ⑥ 신청인이 개조하고자 하는 부품 또는 장치 등의 안전성 또는 성능 등에 대하여 안전성 또는 성능 등을 입증하는 공인기관의 인증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개조검사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기관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항목 및 방법과 그에 따른 개조검사 수수료는 신청인과 검사기관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 ⑦ 신청인이 검사기관에 납부할 개조검사 수수료의 납부 시기는 신청인과 검사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⑧ 일반철도 차량의 대상(범위)에는 동력차(디젤기관차·전기기관차), 도시철도 차량 외의 간선철도 구간을 운행하는 동차(디젤동차·전기동차), 고속철도 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을 제외한 열차의 객차가 포함되며, 도시철도차량의 대상(범위)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전기동차, 경전철 등)이 포함된다.
- ⑨ 개조검사 수수료 항목별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1. 사전협의	1회 프로젝트 기준
2. 개조검사 계획수립	1회 프로젝트 기준
3. 개조적합성 검사	개조적합성 검사 항목에 따라 변동
4. 개조합치성 검사	1회 프로젝트 기준
5. 개조형식시험	개조형식시험 항목에 따라 변동
6. 보고서 작성	1회 프로젝트 기준

## 2. 고속철도 차량, 일반철도 차량 및 도시철도 차량의 수수료

구 분	규 격	기준단가(원)
<b>1. 사전협의</b>	프로젝트별 1회 기준	669,000
기술주요사안 협의		334,732
사전검토 회의(1회)		334,732
<b>2. 개조검사 계획수립</b>	프로젝트별 1회 기준	3,925,000
개조기술기준 확정(특수기준 포함)		981,462
개조적합성 검사 계획수립·관리		981,462
개조합치성 검사 계획수립·관리		981,462
개조형식 시험 계획수립·관리		981,462
<b>3. 개조적합성 검사</b>	품목별 1회 기준	철도차량 형식승인수수료 항목 중 개조대상 장치와 관련되는 검사 항목의 수 수료를 준용
<b>4. 개조합치성 검사</b>	프로젝트별 1회 기준	891,000
<b>5. 개조형식시험</b>	품목별 1회 기준	철도차량 형식승인수수료 항목 중 개조대상 장치와 관련되는 검사 항목의 수 수료를 준용
<b>6. 보고서 작성</b>	프로젝트별 1회 기준	334,000

주) 철도차량 형식승인수수료는 연구원 공지사항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수수료 게시”(최신본)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철도화물차량 수수료

구 분	규 격	기준단가(원)
<b>1. 사전협의</b>	프로젝트별 1회 기준	535,000
기술주요사안 협의		267,785
사전검토 회의(1회)		267,785
<b>2. 개조검사 계획수립</b>	프로젝트별 1회 기준	3,140,000
개조기술기준 확정(특수기준 포함)		785,170
개조적합성 검사 계획수립·관리		785,170
개조합치성 검사 계획수립·관리		785,170
개조형식 시험 계획수립·관리		785,170
<b>3. 개조적합성 검사</b>	품목별 1회 기준	철도차량 형식승인수수료 항목 중 개조대상 장치와 관련되는 검사 항목의 수 수료를 준용
<b>4. 개조합치성 검사</b>	프로젝트별 1회 기준	713,000
<b>5. 개조형식시험</b>	품목별 1회 기준	철도차량 형식승인수수료 항목 중 개조대상 장치와 관련되는 검사 항목의 수 수료를 준용
<b>6. 보고서 작성</b>	프로젝트별 1회 기준	267,000

주) 철도차량 형식승인수수료는 연구원 공지사항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수수료 게시”(최신본)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